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773 |
|----------|-----|

2023년 6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남창진 의원(찬성자 4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순화된 용어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18.8.14.)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4.30.)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을 반영하고자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표] 상위법령 용어 조문 일괄정비 현황 ([붙임 1] 각 조례별 신규조문대비표)

| 조문 | 조례명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
| |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제3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제4조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
| | |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
| 제5조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지역중소건설업자” | “지역중소건설사업자” |
| | | “건설업자” | “건설업을 하는 자” |

-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18.8.14.)을 통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한 사유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 하려는 취지

로 이해되고,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2019.4.30.)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한 사유는, “업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이에,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자”, “건설업자” 등이 포함된 조례 4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지역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정의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건설업자”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붙임 1]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u>건설업자</u>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이하 "<u>건설업자</u>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품질시험계획"이란 <u>건설업자</u>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란 <u>건설업자</u>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p> <p>4.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u>건설업자</u> 등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p> | <p>제2조(정의) ----- -----.</p> <p>1. ----- ----- ----- <u>건설사업자</u> ----- ----- ----- <u>건설사업자</u> ----- ----- -----</p> <p>2. ----- <u>건설사업자</u> ----- ----- -----</p> <p>3. ----- ----- <u>건설사업자</u> ----- ----- -----</p> <p>4. ----- ----- <u>건설사업자</u> ----- -----</p> |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 한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 (이하 "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이란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

-----.

5. -----
건설사업자 -----

-----.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
----- 건설사업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건설사업자 -----

-----.

④ 건설사업자 -----

의 공사감독자 (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영 제55조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로 시험소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기 등) ① ~ ⑤ (생략)
⑥ 시험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 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대리인 (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참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 ⑦ (생략)
⑧ 시험소장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

-----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제8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
--- 건설사업자 -----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6조(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의뢰한 자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 ---

-----건설

사업자-----

----- 건설사업자 -----

-----.

1. ~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p> <p>① (생 략)</p> <p>② 건설공사의 <u>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자</u>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 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 략)</p> | <p>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건설공사의 <u>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인</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 기준) ① (생략)</p> <p>②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u>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u> 이상</p> <p>2. ~ 3. (생략)</p> <p>제8조(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운영 등) ① ~ ⑤ (생략)</p> <p>⑥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u>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u> 이상</p> <p>2. ~ 3. (생략)</p> | <p>제5조(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 ----- <u>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u> 이상</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p> <p>1. ----- ----- ----- ----- <u>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u> 이상</p> <p>2. ~ 3.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지역중소건설업자</u>”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u>건설업자를</u> 말한다.</p> <p>4. ~ 6. (생략)</p> |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중소건설사업자</u>”----- ----- ----- <u>건설업을 하는 자를</u> -----.</p> <p>4. ~ 6. (현행과 같음)</p> |
| <p>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지역건설산업자 및 <u>지역중소건설업자</u>의 수수료·수수액 제고 등 추진 목표</p> <p>5. ~ 7. (생략)</p> <p>③ ~ ⑥ (생략)</p> | <p>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지역중소건설사업자</u>-----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 <p>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지역중소건설업자</u>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p> | <p>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 ----- ----- ----- ----- ----- ----- ----- ----- ----- <u>지역중소건설사업자</u>-----</p> |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건설공사의 분할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

② -----

-- 지역중소건설사업자-----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건설공사의 분할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중소
건설사업자-----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77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8명)

1. 제안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순화된 용어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건설기술자” 등 건설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로 한다.

제8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8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를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 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